

「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2월 6일, 박춘희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6년 3월 12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6년 3월 13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박춘희 의원)

가 . 제안이유

- 현재 운영중인 ‘평창군 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사업’이 「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6조를 근거하여 시행중이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지원 및 운영 내용을 명확히 하여 단독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며,
- 우리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·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,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원근거 마련 (안 제2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(안 제3조~제4조)
- 카드 사용 및 카드시스템 운영·위탁 (안 제5조~제6조)
- 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(안 제7조)
- 사업비의 정산 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「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안」 검토보고서 1부.

2. 「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안」 1부.

「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박춘희 의원
- 제안일자 : 2026. 02. 06.
- 회부일자 : 2026. 03. 12.
- 상정일자 : 2026. 03. 13.

2. 제안이유

- 현재 운영중인 ‘평창군 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사업’이 「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6조를 근거하여 시행중이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지원 및 운영 내용을 명확히 하여 단독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며,
- 우리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·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,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지원근거 마련 (안 제2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(안 제3조~제4조)
- 카드 사용 및 카드시스템 운영·위탁 (안 제5조~제6조)
- 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(안 제7조)
- 사업비의 정산 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,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고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, 부정 사용 방지와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금액 등 지원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,
- 안 제5조에서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바우처카드시스템 운영·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주가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는 사업비의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위생권을 보장하고,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□ **지방자치법**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8. 8., 2024. 1. 9.>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~ 다. (생략)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□ **노인복지법**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6조(경로우대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·농원·박물관·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.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안

(박춘희 의원)

의안 번호	53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6년 2월 6일

발 의 자 박춘희 의원

찬 성 자 남진삼, 심현정, 이은미의원

1. 제안이유

- 현재 운영중인 ‘평창군 어르신 이·미용비 지원사업’이 「평창군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6조를 근거하여 시행중이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지원 및 운영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단독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며
- 우리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·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,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근거 마련 (안 제2조)
- 나. 지원대상 및 지원방안 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카드 사용 및 카드시스템 운영·위탁 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(안 제7조)
- 마. 사업비의 정산 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)

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6. 1. 26. ~ 2. 3. 의견 없음.

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. 다만, 사회복지시설, 장기요양시설, 기타 시설 등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.

제4조(지원방법) ① 목욕비 및 이·미용비는 바우처카드(이하 “카드”라 한다)로 반기별 6만원(연간 12만원)을 지원한다. 다만,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.

② 전입 또는 지원대상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③ 읍·면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반기별로 지원대상 여부를 일괄 조사하여야 하며, 군수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.

④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읍·면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카드를 배부한다.

제5조(카드의 사용) 카드는 군수에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(카드시스템 운영·위탁)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2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주가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
제8조(사업비의 정산 등) 위탁을 받은 전문업체는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,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8호를 삭제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【별지 서식】

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			
구 분	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발급 [사유 : 분실(), 훼손(), 기타()]	
대상자	성 명	생년월일	
	주 소		전 화 번 호
<p>「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」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(지원대상자와의 관계 :)</p> <p>평창군수 귀하</p>			
<p>구비서류 신분증(대리 신청 시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, 대리인의 신분증) ※ 카드 훼손인 경우 : 반납 카드</p>			

관계 법령

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6조(경로우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·능원·박물관·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: '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사업'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
- 관련조문 : 「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(안)」 제6조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'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사업'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원씩 목욕비 및 이·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로 시행하며, 사업운영에 필요한 지원비와 제반 비용(홍보비, 카드 수수료 등)이 소요됨

나. 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
총 소요액	712,000	1,169,020	1,272,600	1,393,800	1,515,000	
대상자(명)	5,800	9,620	10,500	11,500	12,500	
세출	지원비	700,000	1,154,400	1,260,000	1,380,000	1,500,000
	제반비용(홍보비, 카드수수료 등)	12,000	14,620	12,600	13,800	15,000

다. 재원조달 방안 : 자체재원(군비)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이서진
연락처	(033) 330 - 2124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 출		712,000	1,169,020	1,272,600	1,393,800	1,515,000	6,062,420
어르신 아·미용비 지원		712,000	1,169,020	1,272,600	1,393,800	1,515,000	6,062,420
재원 조달		712,000	1,169,020	1,272,600	1,393,800	1,515,000	6,062,42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712,000	1,169,020	1,272,600	1,393,800	1,515,000	6,062,420
	지방세(군비)	712,000	1,169,020	1,272,600	1,393,800	1,515,000	6,062,42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민간자본							
해외자본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